

◇개정이유

개가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개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일 처리용량이 2,000m³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대상 추가(안 제9조제1호)

- 1) 가축의 범위에 개가 추가되면서 이미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개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온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중복 부담임.
- 2) 1일 처리용량이 2,000m³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함.

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종류 및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세분화(안 별표 4)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를 도모함.

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5 비고 제1호)

- 1)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하는 자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그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과중한 부담이 됨.
- 2)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하는 자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에 대해서는 면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10월 13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244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과세표준”을 각각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호 또는 제2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제5항(중전의 제4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대장”을 “가맹정보시스템”으로, “기록·관리”를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제3항 중 “30일”은 “20일”로 본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④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제7항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등록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별표 1 제3호나목

4. 별표 1 제4호

제5조의4제4항 중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가맹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차목까지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제5조의6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예치기관 중 어느 하나를”을 “예치기관을”로 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작성한”을 “마지막으로 등록한”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를 “가맹사업의”로 한다.

제1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059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 시행 후 가맹본부가 별표 1 제2호바목·아목,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사목3)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나.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라.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마.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 가맹본부의 설립일(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

다.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가맹사업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마.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해당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상호, 서비스 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다만,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합

계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3)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1)의 정보(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정보만 해당한다)

사. 가맹본부의 현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단(가맹사업 관련 임원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임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상근·비상근 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보

- 1)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 등록·등록신청 여부, 등록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 등록·출원번호 및 등록일·출원일을 포함한다)
- 2)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 3)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 4)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받은 기간 및 사용 범위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나.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한 가맹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다.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누어 기재한다)

라.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마.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바.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5명 미만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정확한 매출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사.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정보

- 1)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

부와 맺은 계약기간

2)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의 상대방인지 여부

3)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수)

아.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광고 및 판촉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만 기재한다)

자.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2) 가맹금 예치절차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차.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보험금액

2) 보장범위 및 지급조건

3) 보험금의 수령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계약금, 가입비,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금입차료,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 대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기재한다)

2) 보증금·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액수를 기재한다)

4) 1)과 2) 외에 가맹점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대가(위치나 점포 크기 등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예시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

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의 내역, 지급대상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요구 또는 권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또는 용역의 비용

다) 설계 및 감리 비용

라) 그 밖의 필요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 업체(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각각의 내역을 나누어 기재한다)

2) 가맹본부가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점포 이전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한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대가

4)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한 물품의 반품조건 등 재고물품 처리 방안을 포함한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그 외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되, 가맹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품목명을 포함한다) 및 금액(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되, 가맹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할 수 있다)

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라.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 2)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 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 1)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하는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또는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가맹계약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보장하는 경우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범위 및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영업표지의 종류)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 3)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1) 가맹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
-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요건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경업금지 기간, 업종, 지역을 기재한다)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자.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가맹점사업자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및 그 기간을 포함한다)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을 포함한다)

나.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하되, 정확한 기간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다. 각 절차에 드는 비용(절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비용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비용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라.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가. 교육·훈련의 주요내용(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한다)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

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대신에 지정한 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마.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별표 1 제3호: 사목1) 및 2) 별표 1 제5호 및 제6호 : 전체 별표 1 제8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 3) 및 아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사항 중 별표 1의 제2호바목, 제3호바목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사항	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자목 및 차목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기준		
		1차	2차	3차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6항 제1호	200	500	1,000
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6항 제2호	200	500	1,000
3.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6항 제3호	140	350	700
4.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3조제7항 제1호	60	150	300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7항 제2호	60	150	300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영 업 표 지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참고 사항	대표업종	편의점(), 농수산(), 건강식품(), 의류·패션(), 화장품(), 기타도소매(), 패스트푸드(), 주류(), 제과·제빵(), 기타외식(), 교육서비스(), 자동차관련(), 이미용(), 스포츠(), 배달서비스(), 유아관련(), 컴퓨터관련(), 유지관리서비스(), 기타서비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기재합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 비 서 류	1. 정보공개서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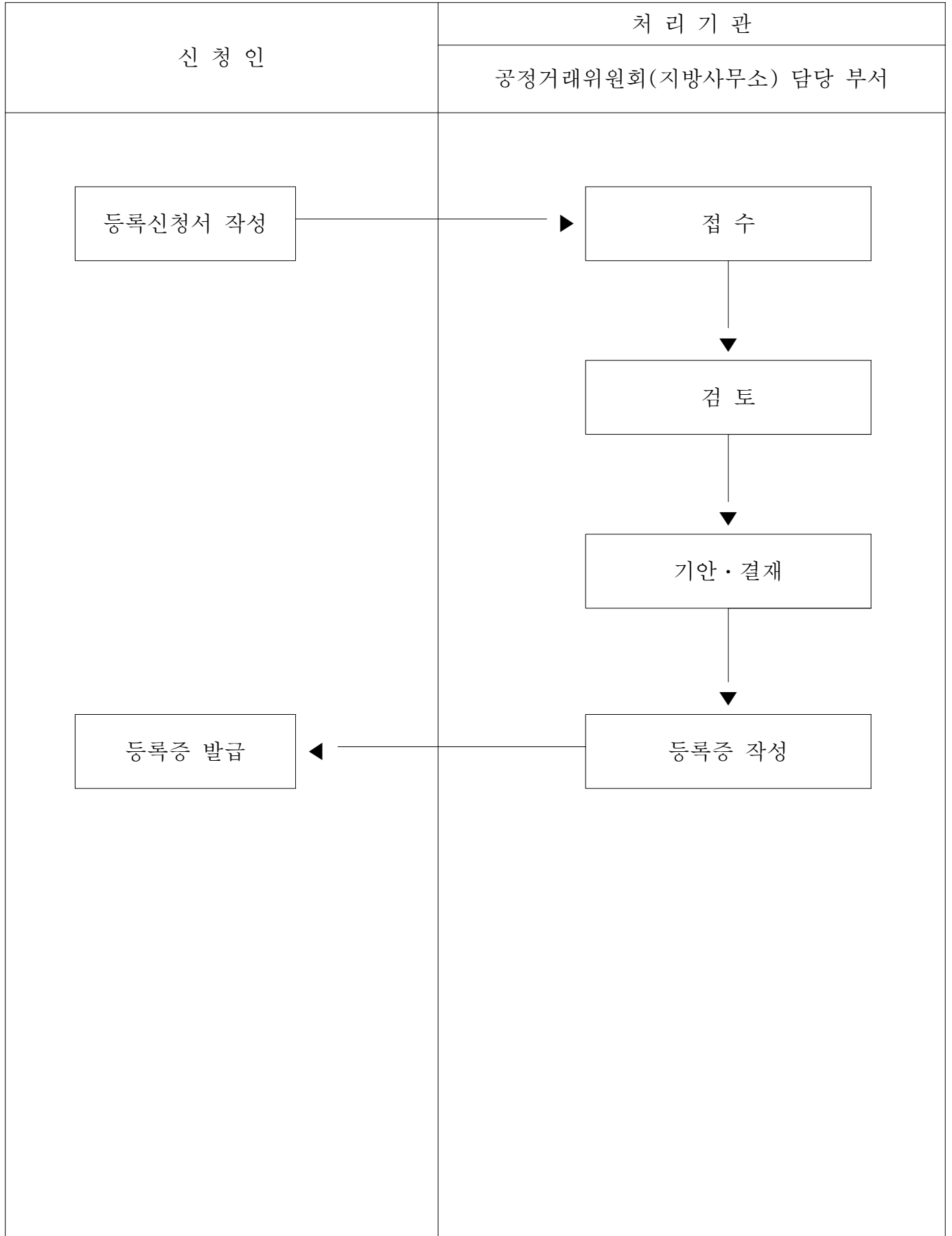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정보공개서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변경등록(20일) 변경신고(3일)
신 청 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대표 휴대전화	대표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실 주소) * 위 소재지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변경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기재합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된 정보공개서(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신청서(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과 변경신고사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 해당네모에 모두 표시합니다.
2.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름을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기재합니다. [예: (주)공정위]
3.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 기재 후 괄호 안에 병기합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4.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5.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문자(SMS)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개인 휴대전화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 대표 인터넷 홈페이지와 별도로 해당 영업표지와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7.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정보공개서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을 기재합니다. 담당자 사무실의 소재지가 회사 본점 소재지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9. 신청사항: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보공개서 관련 쪽수와 함께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10. 변경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개정이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조정하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등을 추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격취소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그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추가 및 처리기간 조정(안 제5조의2)

- 1)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간략하고, 등록 처리기간이 실제 업무 처리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아 정보공개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3) 정보공개서 내용 및 등록심사가 내실화됨에 따라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가 가맹사업 관련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12조)

- 1) 현행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부 중요 사항이 빠져 있어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책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함.
- 3)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권리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사유 명확화(안 제15조)

- 1)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관한 현행 규정은 그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격취소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그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계약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그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3)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 당사자의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및 변경등록기한 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 1)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 등이 빠져 있고, 상당수 가맹본부가 재무제표의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목적별 광고관측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가맹계약 체결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